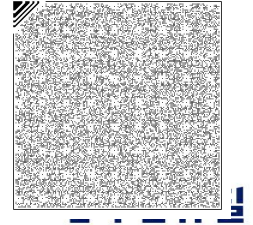
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(주)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23개사 업체 대표이사 귀하
(경유)

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정정)(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)

1. 관련: 의약품안전평가과-1268(2021.2.24.), -1703(2021.3.15.)
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는 "발라시클로비르" 성분 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 국내·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, 사전예고 및 변경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"발라시클로비르"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반영일자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허가사항 변경명령 반영일자: 2021.06.08. → 2021.06.15.
 - 변경(행정)지시 시행일자: 2021.03.08. → 2021.03.15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심사관	김보라	사무관	문성은	의약품안전평가과장	전결 2021.3.15. 김정연
협조자					
시행	의약품안전평가과-1705 (2021. 3. 15.)			접수	
우 28159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				/ www.mfds.go.kr
전화번호	043-719-2716	팩스번호	043-719-2700	/ bora52@korea.kr	/ 대국민 공개